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,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II. 검토의견

-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 문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